

오산시의회 공고 제2019-14호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15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명철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학교를 현행 초·중·고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오산시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항).
- 나. 오산시생활체육회가 오산시체육회로 통합되었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오산시체육회로 변경함(안 제2조제2항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19년 4월 19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오산시생활체육회”를 “오산시체육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원대상 등) ① 오산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2조에 따른 오산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 (이하 "사용료"라 한다)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오산시생활체육회</u>에 가입된 동호회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지원대상 등) ① ----- -----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2조 및 「<u>고등교육법</u>」 제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오산시체육회</u>----- 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